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53
----------	------------

제안연월일 : 2021년 3월 3일
제안자 : 교 육 위 원 장

I. 수정이유

- 「자치입법 업무매뉴얼」에 따른 체계·자구 수정

II. 주요내용

1. 체계자구 수정(안 제3조, 안 제6조 및 제10조)

III.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호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를 “학생”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안 제10조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원안과 같음)</p> <p>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p>
<p>제6조(사회적가치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p> <p>2. ~ 4.(생략)</p>	<p>제6조(사회적가치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원안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p> <p>2. ~ 4.(원안과 같음)</p>
<p>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의 일부를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5조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의 일부를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공무원 및 학생 등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한다.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2.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4.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6.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7.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9.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10.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11.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12.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13.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14. 문화적 권리의 보장과 일과 여가의 조화
15.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종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사회적 가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 가치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교육 추진 방안
3. 사회적 가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사회적 가치 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5.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적가치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가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가치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가치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적 가치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3. 사회적 가치 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 가치 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4. 사회적 가치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5조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

하는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의 일부를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 가치 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각종 연수 활성화, 사회적 가치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사회적 가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